

## 제 4 장 총회

**제17조(총회의 지위)**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**제18조(개최시기)** ① 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.

1.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 표시하여 요구하는 경우
2. 감사가 회의목적 사항을 표시하여 요구하는 경우

**제19조(총회 의결사항)**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2.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4. 법인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
5.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6. 기타 본회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
7. 이사회 또는 회장이 부의한 사항

**제20조(회의소집)** ① 총회는 제17조에 의거하여 회장이 소집한다.

②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와 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21조(총회개회와 의결정족수)** ①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있다.

③ 임원의 해임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22조(의결권 대리행사)** ①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② 대리인은 총회의 의장 및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으로 한다.

③ 대리인은 대리인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23조(의결권의 제한)**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①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해당 임원 자신에 관한 사항

② 금품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

사항

- 제24조(총회 회의록)** ① 총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보존하여야 한다.  
② 총회 회의록에는 회의의 안건별 경과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회원 3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